

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원중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의 ‘문화재’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하고,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상이하여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
- 또한, ‘문화재’를 ‘국가유산’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유산과 연계된 관련 법이 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부와 정책 기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.

- 이에 상위법 제·개정예 따라 ‘문화재’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를 폐지하고, ‘국가유산’ 등의 체제로 변경한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